

환경친화적 기업경영(9)

- ESSD와 기업경영 -



한상욱
아태환경경영연구원
원장

목차

- I. 지속가능한 개발이념과 실현 수단
- II. 지구환경문제와 기업의 당면 과제
 1. 환경문제와 기업
 2. 환경영향의 도입
 3. 환경 및 경영요소의 통합
- III. 환경영향 표준과 유사 프로그램
 1. 환경영향규격의 생성 배경
 2. 국제규격의 종류 및 내용
 3. 다른 환경영향 원칙 및 프로그램
- IV. 국내 제도 및 운영 실태
 5. ISO 14001/14004/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비교
- V. 환경영향 도입에 따른 기본 전제
 1. 환경영향의 기본원리와 도입에 따른 이점
 2. 환경영향의 도입에 따른 실천전략
 3. 성공적인 환경영향을 위하여 극복하여야 할 과제

4.3.2. 근거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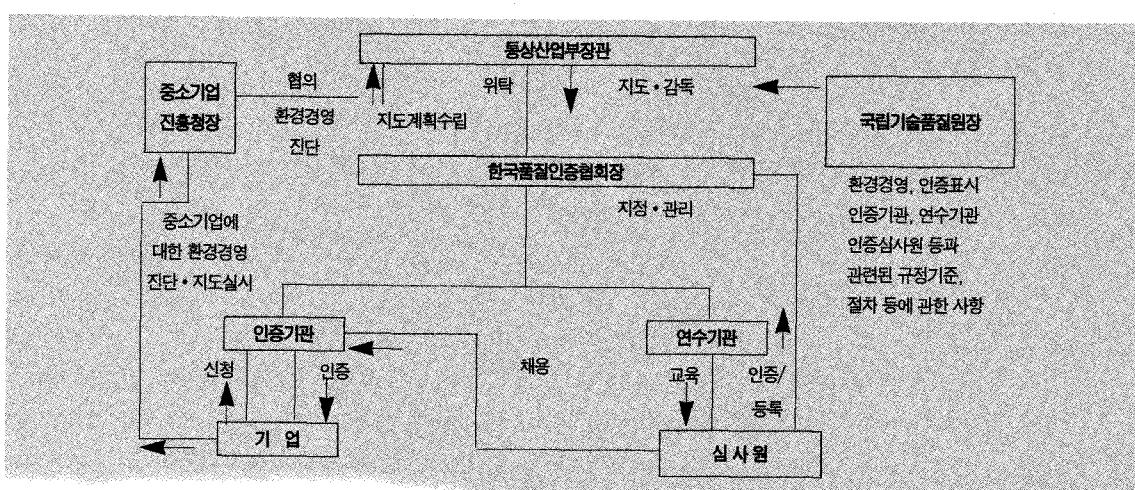
10.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지도·감독(제10조)
 - 영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 수행
 - 지도·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립기술 품질원장으로 하여금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1. 시행일 및 특례규정(부칙 제1조-제4조)

- 시행일은 96년 10월 1일부터(제1조)
- 인증 심사원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제2조)
- 심사반 구성에 관한 특례(제3조)
- 연수과정 강사에 관한 특례(제4조)

4.3.3. 향후조치계획(통상산업부)

- 1) ISO 14000 제정 실시에 체계적으로 대응
 - 통산부장관이 제도를 관리 감독하고 인증기관, 연수 기관, 심사원 전문기관을 육성하여 인증, 심사원 양성 등 업무수행



- 2) 97년부터 본격적인 인증실시를 목표로 준비
- 용어정립, 분위기조성 등 제도시행을 위한 여건조성 및 제도정비
 - 제도시행에 필요한 기본요소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제도를 완성
 - 인증제도의 운영경험을 축적하고 국제적으로 신뢰성있는 제도로 발전

3)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영영지도

-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영영 인증지도사업 실시
- 환경경영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 강화

4) 국제상호인정의 기반조성

- 외국 인정기관과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
- 국내 인증이 외국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국내기반 조성

4.4.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환경부)

동제도는 1987년부터 시행하여 오던 「환경관리 모범업소지정」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95년 4월14일자로 환경부 예규 제122호 「환경친화기업경영 체제 운영규정」을 제정하므로서 도입되었다.

그간의 제도 운영 실적을 보면, 96년 3월30일 현재 총 120개 사업장이 신청, 82개 사업장이 환경친화 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96년 2월26일자로 환경부예규 제136호 「환경친화 기업지정제도 운영 규정」을 공포한 이후 20개 사업장이 추가되어 현재 120개 기업이 환경친화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동제도는 법적근거가 없이 예규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95년 12월29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환경친화적기업 지정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6년 9월까지 마련되므로서 앞으로는 동예규가 폐지되고 법적근

거를 갖는 운영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질환경보전법상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관련 규정을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24. 표 참조)

현재 예규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환경성평가 및 개선계획서의 작성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성평가 및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사업활동개요
2. 환경관리 일반현황
 - 가. 환경보전기본원칙
 - 나. 환경전담부서의 조직, 임원, 기능 및 권한
 - 다. 환경전담부서 이외 부서의 환경관련 역할
 - 라. 비상대응체계 구축현황
 - 마. 작업장 환경·안전 관리현황
 - 바. 입지평가 및 입지상 환경관리현황
 - 사. 환경관련 법규 준수현황 및 환경사고·민원현황
 - 아. 환경관련 활동
3. 사업활동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
 - 가. 공정흐름도 및 공정설명
 - 나. 단위공정별 물질수지표 및 용수, 에너지, 오염물질별 사용·배출원 단위다.
 - 다. 투입물(원료·연료·용수·유독물질 등) 및 배출물(제품·반제품·부산물·오염물질 등) 현황(종류·농도·총량 및 관리현황)
 - 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관리현황
 - 마. 폐기물 관리현황
 - 바. 유독물질 사용·관리현황
 - 사. 기타 환경관리(VOC·소음·악취·비산먼지·토양·지하수·off-site 관리 및 국제 환경협약상 준수사항 등) 현황
 - 아. 공정·기술·제품상 개선문제의 우선순위 평가
 - 자. 국내외 등증 또는 유사업체 환경관리 현황조사 및 비교
4. 환경개선계획
 - 가. 환경관리개선 세부내용
 - 나. 환경기술개발·적용현황
 - 다.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및 생산현황
5. 환경개선계획
 - 가. 환경개선계획 내용
 - 나. 환경개선계획의 실행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
 - 다. 개선계획 이행사의 정량적인 환경개선 효과·전망
 - 라. 기업환경비전으로서 중장기 환경개선 방향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사용금지·폐쇄명령·조업

- 수질환경보전법상 환경친화기업 관련 규정(별첨)

법률 (95.12.29 개정)	시행령 (96.7.31 개정)	시행규칙 (96.8.12 개정)
제10조의 2(환경친화기업지정) <p>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기타 환경보호 활동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경 우 지정기준 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업진흥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한 환경영향체제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 기업지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감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p>① 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허기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6. 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배출시설도서 원료, 부원료, 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p>④ 법제1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기(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때는 이를 신고(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신고를 말한다)로 갈음 할 수 있다.</p>	제13조(환경친화적기업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등) <p>① 환경부장관은 법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업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기타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법 제10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해당 기업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별지 6호 서식(서식생략, 주요 기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에 관한 사항(상호, 대표자, 주소 등) • 사업장 소재지, 본사 소재지 • 신청현황(사업규모, 주생산품, 자본금, 종업원, 환경 관리현황 및 개선 계획서 요약) • 구비서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 계획서 각 2부) <p>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관련사항별행</p> <p>13조 제1항에 의한 고시가 아직 안됨 (96.8.20 현재)</p>

-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친화기업 관련 규정(별첨)

법률 (95.12.29 개정)	시행령 (96.8.31 개정)	시행규칙 (96.9.14 개정)
제10조의 2 (환경친화기업지정) <p>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기타 환경보호 활동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경 우 지정기준 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업진흥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한 환경영향체제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 기업지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감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제20조(환경친화적기업의 지정기준) <p>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을 지정 할때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기업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1조(환경친화적기업지정 신청)</p> <p>법 제10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해당 기업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별지 7호 서식</p> <p>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7과 동일</p>	

정지·허가취소·이전명령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신청당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조정 기타 민원이 제기된 기업은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2) 자격검토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관리청장은 신청자격 제한 사유를 참작한 후 당해 기업에서 제출한 「환경성평가 및 개선계획서」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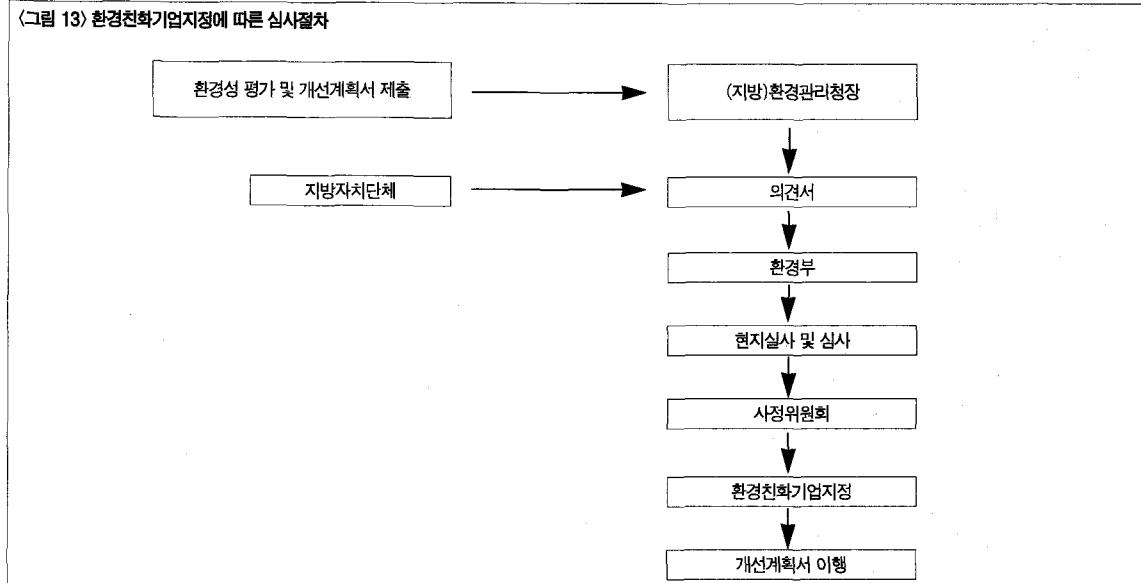
3) 심사

환경부장관은 환경관리청장의 심사의뢰를 받은 때 환경·산업분야별 90인 이내의 전문가 및 환경부 소속 관련 공무원, 신청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 환경관리공단직원들로서 구성된 5내지 15인을 선정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출된 평점 결과 400점 만점 중 심사 위원 개인별 성향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최고평점과 최저평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한 값 320점 이상인 기업을 환경친화기업 지정대상으로 한다(그림 13 참조).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개별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양태를
총량으로 산정하고 오염물질의
배출량 감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환경개선계획서를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지정하는
제도로서 심사의 대상은 환경영영체제
인증규격(ISO 14001표준)의
계획(4.3)항의 환경측면(4.3.1),
법규 및 기타요건(4.3.2), 목표 및
세부목표(4.3.3), 환경영영 추진계획
(4.3.4)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 환경친화기업지정에 따른 심사절차



4) 최종사정 및 친화기업지정

3)에서 환경친화기업 지정대상이 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단장(환경정책실장)을 비롯하여 대기보전국장·수질보전국장·폐기물자원국장 및 유독물질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이들 중 이의가 없는 경우 지정이 확정되며 소정의 지정서와 지정현판을 교부한다. 지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다.

환경친화기업 평지정기업의 권리의무 및 사후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정된 기업은 신청당시 제출한 개선계획서상의 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하고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환경관리청장에게 개선계획의 실제 이행내역 및 차기 1년간의 세부 이행계획, 주요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환경관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업을 방문하여 환경관리현황 및 개선계획 이행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외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중대한 환경오염사고 또는 심각한 환경관련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에 개선 계획서 작성대행을 의뢰하여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천자격 제한 사유중 열거된 행정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앞에서 설명한 지정기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한편,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를 신고로 대체
2.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오염물질의 체취·검사 등의 면제
3. 중소기업의 경우 방지시설 설치자금 응자 신청시 우선순위 적용
4. 각종 표창시 우선순위 적용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하는 사항

현행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업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백화점 등 유통업체, 운송업체, 건설업체 등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5. 양제도의 비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환경영영체제 인증제도는 환경영영을 위한 핵심요건 즉, 환경방침의 설정, 계획의 수립,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경영자 검토 등의 요건에 부합시킨 조직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환경영영체제가 환경영영 요건에 부합되고, 유지되며 환경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므로 인증이 유지된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개별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양태를 총량으로 산정하고 오염물질의 배출량 감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환경개선계획서를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지정하는 제도로서 심사의 대상은 환경영영체제 인증규격(ISO 14001 표준)의 계획(4.3)항의 환경측면(4.3.1), 법규 및 기타요건(4.3.2), 목표 및 세부목표(4.3.3), 환경영영 추진계획(4.3.4)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인 바,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는 환경영영체제구축에 중점을 두고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환경실행성에 중점을 두므로 양제도에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제도의 단면만을 비교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는 양제도를 보다 구체화시켜 비교하므로서 명백해질 것이다(표 6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영영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적인 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업은 사업의 종류, 규모,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규격을 선택하는 환경영영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다른 규격과 단체프로그램 등은 환경

경영체제 운영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수용하여 환경경영의 내실을 도모토록 한다(그림 14 참조).

(표6) 환경영업체제 인증제도와 환경친화 기업지정제도 비교

항목	환경경영체제 인증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개선을 목표로 환경영업체제의 구축 및 운영 환경경영계획은 환경영업체제내에서 수립,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개선을 목표로 환경개선 계획의 수립, 실행
실사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경영체제구축 운영, 유지여부 (문서, 현장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개선 계획 (문서, 현장실사)
심사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인증기관 자율적인 환경영업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자율적인 환경관리도모
지정에 따른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친화기업으로의 이미지제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신뢰성 확보 (Green Pass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친화기업으로 이미지제고 법적의무요건의 완화 및 지원
환경행정과의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업무와 간접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 (환경부업무와 직접연계)
참여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전제로 한 ISO 규격 인증 대비 기업 이미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전제로 한 규제완화 기업 이미지 제고
기업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경영체제 구축운영 유지 및 인증심사비용 (기선설비, 인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적인 환경개선목표 실행에 따른 비용 (기선설비, 절차비)

(그림 14) 환경영업체제의 구축에 따른 표준과 구축효과

